

# '25년 통관아로 자원센터 설문조사(AEO MRA 혜택 체감도) 결과 안내

(’25.06.24, (사)한국AEO진흥협회)

## □ 조사개요

- (목적) AEO MRA 혜택에 대한 체감도 조사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 (기간·방식) ’25년 3월 13일~4월 4일,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 \* 설문조사 링크 이메일 발송
- (대상) AEO 수출입 업체
- (응답) 89개사 (회원사 44개사, 비회원사 45개사)
- (내용) AEO MRA 혜택 및 혜택 적용 절차 등 (37개 문항)

구분	내용
기업 개요 및 기업별 AEO 현황	▪ 직책
	▪ 수출입신고 이행 여부
	▪ 기업규모
	▪ 공인부문
	▪ 공인등급
	▪ 공인기간
	▪ 취급물품
	▪ 주요 수출국가
	▪ 해외 자회사 보유 여부
AEO MRA 혜택 및 혜택 적용 절차	▪ 국가별 AEO MRA 혜택(ex.물품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비율 감소 등) 체감도
	▪ AEO MRA 혜택 적용 절차 숙지도
	▪ AEO CODE 신청 관련
	▪ 신속 통관 혜택 경험 여부
	▪ AEO MRA 혜택 5가지 외 필요한 추가 혜택

□ 조사결과

1. AEO MRA 제도 전반에 대한 체감 현황

○ 설문 대상 약 71%가 AEO MRA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

구분	응답 수		비율	
	체감	미 체감	체감	미 체감
	26	63	29.2%	70.8%

2. 기업 특성별 AEO MRA 혜택 체감 경향

○ 기업 규모가 큰 기업 (중견 이상)일수록 AEO MRA 혜택 체감률이 높음

구분	응답 수			총계 대비 체감 비율
	체감	미 체감	총계	
중소기업	7	27	34	20.5%
중견기업 이상	19	36	55	67.1%

○ 공인등급이 높을수록 AEO MRA 혜택 체감률이 높음

구분	응답 수			총계 대비 체감 비율
	체감	미 체감	총계	
A등급	14	49	63	22.2%
AA등급	6	12	18	33.3%
AAA등급	6	2	8	75%

○ 해외 자회사 보유 여부에 따른 AEO MRA 혜택 체감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구분	응답 수			총계 대비 체감 비율
	체감	미 체감	총계	
해외자회사 보유	13	36	49	26.5%
해외자회사 미보유	13	27	40	32.5%

○ 취급 품목군별로 AEO MRA 혜택 체감률의 차이가 두드러짐

구분(총계 상위 3개 기준)	응답 수			총계 대비 체감 비율
	체감	미 체감	총계	
광물성 연료, 화학품	3	2	5	60%
철도 및 차량부품	4	7	11	36.4%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7	16	23	30.4%

### 3. AEO CODE 활용 현황 및 AEO MRA 혜택 체감과의 연관성

-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AEO CODE\*를 활용하는 기업의 AEO MRA 혜택 체감률이 높음

구분	응답 수			총계 대비 체감 비율
	체감	미 체감	총계	
AEO CODE 활용	18	6	24	73.9%
AEO CODE 미 활용	0	18	18	0%

\* AEO기업의 고유 번호로 수입 거래업체에서 해당 AEO CODE를 입력해야 MRA혜택을 적용받음

### 4. AEO MRA 절차 인지도 수준과 혜택 체감률 비교

- AEO MRA 혜택 적용 절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기업은 AEO MRA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함

구분	응답 수			총계 대비 체감 비율
	체감	미 체감	총계	
미 인지(2점 이하)	0	21	21	0%

\* 인지점수 : 거의 알지 못함-1점 / 잘 알지 못함-2점

- AEO MRA 혜택 적용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상위 3개
  - 국가별 MRA 혜택 적용 방법에 대한 직관적인 자료 부족 (42.1%)
  - MRA 혜택 적용 방법 안내자료 홍보 부족 (17.2%)
  - MRA혜택 적용 방법에 대한 자료 현행화 미흡 (14.5%)

### 5. 국가별 AEO MRA 혜택 체감도

- 각 AEO MRA 혜택별 혜택이 가장 체감되는 국가 및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
  - (물품검사비용 축소) ‘미국’ 에서 가장 체감되며, ‘중국’ 에서 가장 체감이 어려움

순위	가장 체감되는 국가 상위 5개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 상위 5개	
	구분	응답 수	구분	응답 수
1	미국	50	중국	29
2	중국	39	미국	21
3	일본	21	인도	15
4	대만	14	일본	11
5	인도	10	대만	7

- (검사 선별 시 우선검사) '미국' 에서 가장 체감되며, '중국' 에서 가장 체감이 어려움

순위	가장 체감되는 국가 상위 5개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 상위 5개	
	구분	응답 수	구분	응답 수
1	미국	45	중국	29
2	중국	38	미국	18
3	일본	23	인도	16
4	대만	12	일본	10
5	싱가포르	10	멕시코	12

- (서류제출 비율 감소) 가장 체감되는 국가 및 체감이 어려운 국가는 '중국' 임

순위	가장 체감되는 국가 상위 5개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 상위 5개	
	구분	응답 수	구분	응답 수
1	중국	35	중국	27
2	일본	38	인도	22
3	싱가포르	17	일본	15
4	호주	15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8
5	인도	13	말레이시아	13

- (비상 시 AEO 화물 우선 조치) 가장 체감되는 국가 및 체감이 어려운 국가는 '중국' 임

순위	가장 체감되는 국가 상위 5개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 상위 5개	
	구분	응답 수	구분	응답 수
1	중국	24	중국	34
2	대만	22	인도	20
3	호주	15	멕시코	14
4	싱가포르	11	아랍에미리트연합(UAE)	9
5	인도네시아	10	인도네시아	9

- (세관 연락망 활용) 가장 체감되는 국가 및 체감이 어려운 국가는 '중국' 임

순위	가장 체감되는 국가 상위 5개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 상위 5개	
	구분	응답 수	구분	응답 수
1	중국	38	중국	34
2	대만	27	인도	18
3	호주	19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5
4	인도	11	멕시코	13
5	인도네시아	9	인도네시아	11

## 6. 제도 개선 요구 및 추가 혜택 및 협정 수요

### ○ 필요한 추가 AEO MRA 혜택

구분	상세 내용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우선검사
	통관 시 추가서류 요구 비율 감소
	해당국 수입 인증(혹은 면제인증 승인) 등 사후제출 허용
	서류제출 간소화
	검사 생략
	검사비용 지원, 서류 제출 면제
	조치결과 통보
	미국발 화물의 사전신고제도(AMS, ISF) 제출 기한 축소
세금 및 관세 관련 지원	세금 감면 혜택
	관세 특혜
	상대국 비관세 혜택 외 관세 혜택 제공 방안 고려
원산지 및 인증 관련 간소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통관 가능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원산지 표기검사 면제
기타	위험물 내륙운송 물품이동추적 생략(GPS 시스템 활용 혜택 도입)
	AEO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 MRA 신청 없이 연동
	품목분류 및 관세 관련 이슈 시 상대 세관 협조

### ○ AEO MRA 제도에 가장 바라는 점은 ‘국가가 간 혜택 실증 자료 제시’임

요소	응답 수
국가 간 혜택 실증 자료 제시	35
MRA 혜택 추가 발굴	22
MRA 체결국 밀착 관리	20
MRA 체결국의 확대	12

### ○ 가장 희망하는 추가 AEO MRA 체결국은 ‘EU’, ‘필리핀’ 임

구분	응답 수
EU	53
필리핀	14
브라질	6
러시아, 베트남	4
가타(나이지리아 등)	2

- 2024년 우리나라의 對 EU 및 필리핀 수출 비중은 각각 10%, 1.5%\*

\* 출처 : 지표누리, 국가통계포털(KOSIS)

## □ 시사점 및 필요사항

### ○ 기업 특성 별 AEO MRA 혜택 체감률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

- (시사점) 기업 유형, 공인등급, 취급 품목에 따라 체감률이 상이
- (필요사항) 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안내 및 교육 콘텐츠 설계

### ○ AEO MRA 혜택 체감을 위한 AEO CODE 활용 절차 홍보 필요

- (시사점) AEO CODE 미활용 기업과 절차 인지도가 낮은 기업은 혜택 체감률 0%
- (필요사항) 실무 중심의 국가별 AEO CODE 활용방법과 단계별 AEO MRA 안내자료 제공 및 홍보

### ○ 국가별 AEO MRA 혜택 체감 격차가 존재함

- (시사점 1) AEO MRA 체결국임에도 혜택 체감이 어렵다는 응답 다수
- (시사점 2) 국토가 광범위한 국가의 경우, 지방세관별 AEO MRA 적용 절차가 상이하여 혜택 체감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필요사항 1) 혜택 체감률이 낮은 국가에 대한 제도 운용 개선 및 신규 체결 시 요구사항 반영
- (필요사항 2) 국토가 광범위한 국가와 AEO MRA 협상 시, 일원화된 적용 절차가 체결국 전역의 세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

### ○ 실질적인 혜택 체감을 위한 수치 기반 자료와 추가 혜택 항목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

- (시사점) 기업들은 ‘국가 간 혜택 실증자료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필요사항) 통관 시간 단축 등 정량적 실증자료 제공 및 실효성 높은 신규 혜택 발굴

□ 붙임자료

1. 25년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 상세내용

[붙임 1]

## '25년 통관아로 자원센터 설문조사(AEO MRA혜택 체감도) 결과 상세내용

### □ 설문 응답자

1. [회사명] 귀사의 회사명을 작성해 주세요. (응답사 목록 참조)
2. [응답자 직책] 귀하의 직책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	AEO 담당자	타 업무 담당자
응답자	0	0	58	29	2
비율	0	0	65.2	32.6	2.2

- 2-1. [응답자 업무] 귀하는 수출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가요?

(단위 : 명, %)

구분	네	아니오
응답자	78	11
비율	87.6	12.4

3. [기업 규모] 귀사의 기업 규모를 선택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응답자	34	35	20	0
비율	38.2	39.3	22.5	0

4. [공인 부문] 귀사의 AEO 공인 부문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수출	수입	수출입
응답자	40	3	46
비율	44.9	3.4	51.7

5. [공인 등급] 귀사의 AEO 공인 등급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A	AA	AAA
응답자	63	18	8
비율	70.8	20.2	9

6. [공인기간] 귀사의 AEO 공인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응답자	23	33	33
비율	25.8	37.1	37.1

7. [취급물품] 주요 취급물품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HS85)	23	25.8
그 외 기타 기계류(HS84)	13	14.6
철도 및 차량부품(HS87)	11	12.4
광물성 연료, 화학품(HS27, 29)	5	5.6
철강 및 철강 제품(HS72, 73)	5	5.6
플라스틱과 그 제품(HS39)	4	4.5
광학기기 등(HS90)	0	0
선박과 수상구조물(HS89)	0	0
기타*	28	31.5

\* 화장품, 알루미늄 시트, 석유화학제품, 공수축산물가공, 자동차부품, 위생필름, 섬유, 의류 등

8. [주요 수출국] 1순위 주요 수출국가를 작성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미국	25	29
중국	15	17.4
베트남	13	15
대만	7	8.1

일본	7	8.1
인도네시아	2	2.3
헝가리	2	2.3
말레이시아	2	2.3
인도	2	2.3
독일	1	1.2
동남아	1	1.2
EU	1	1.2
태국	1	1.2
폴란드	1	1.2
브라질	1	1.2
러시아	1	1.2
사우디	1	1.2
터키	1	1.2
몽골	1	1.2
싱가포르	1	1.2

※수입부문의 답변 3건(해당사항 없음)은 제외함

8-1. [주요 수출국] 2순위 주요 수출국가를 작성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중국	17	23.2
미국	11	15
일본	5	7
EU	5	7
싱가포르	4	5.5
캐나다	3	4.1
베트남	3	4.1
동남아시아	3	4.1
대만	3	4.1
인도	3	4.1
말레이시아	2	3

멕시코	2	3
프랑스	2	3
필리핀	2	3
독일	1	1.4
러시아	1	1.4
체코	1	1.4
튀르키예	1	1.4
나이지리아	1	1.4
아시아	1	1.4
미얀마	1	1.4

8-2. [주요 수출국] 3순위 주요 수출국가를 작성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인도	5	9.1
EU	1	1.8
스페인	1	1.8
중국	13	23.6
독일	1	1.8
미국	8	14.5
멕시코	3	5.6
호주	3	5.6
필리핀	1	1.8
대만	2	3.6
사우디	1	1.8
인도네시아	1	1.8
베트남	1	1.8
브라질	1	1.8
괌	1	1.8
일본	3	5.6
태국	1	1.8
헝가리	1	1.8

홍콩	1	1.8
중남미	1	1.8
말레이시아	1	1.8
스리랑카	1	1.8
네덜란드	1	1.8
체코	1	1.8
터키	1	1.8

9. [자회사 보유]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단위 : 명, %)

구분	네	아니오
응답자	40	49
비율	44.9	55.1

9-1. [거래비중]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거래비중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0~20%	20~40%	40~60%	60~80%	80~100%
응답자	21	6	2	7	4
비율	52.5	15	5	17.5	10

9-2. [자회사 AEO공인 여부] 해외 자회사의 AEO 공인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보유	미보유
응답자	14	26
비율	35	65

10-1. [MRA 혜택] 물품검사비율 축소 혜택이 가장 체감되는 국가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누적가중치
미국	50	71.4	129
중국	39	55.7	88

일본	21	30	40
대만	14	20	26
인도	10	14.2	16
인도네시아	7	10	16
싱가포르	8	11.4	15
호주	6	8.57	12
말레이시아	5	7.14	10
멕시코	5	7.14	9
튀르키예	4	5.71	8
태국	7	10	7
캐나다	4	5.71	6
홍콩	4	5.71	5
아랍에미리트연합(UAE)	0	0	0
뉴질랜드	0	0	0
이스라엘	0	0	0
페루	0	0	0
도미니카공화국	0	0	0

10-2. [MRA 혜택]물품검사비율 축소 혜택이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누적가중치
중국	29	47.5	80
미국	21	34.4	42
인도	15	24.5	36
일본	11	18	21
대만	7	11.4	17
멕시코	10	16.3	16
아랍에미리트연합(UAE)	8	13.1	16
튀르키예	7	11.4	13
홍콩	6	9.83	12
말레이시아	6	9.83	12

태국	7	11.4	12
싱가포르	4	6.55	10
페루	4	6.55	9
도미니카공화국	5	8.19	9
호주	4	6.55	8
인도네시아	7	11.4	8
이스라엘	6	9.83	8
캐나다	3	4.91	6
뉴질랜드	0	0	0

11-1. [MRA 혜택]검사 선별 시 우선검사 혜택이 가장 체감되는 국가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누적가중치
미국	45	68.1	119
중국	38	57.5	87
일본	23	34.8	43
대만	12	18.1	21
싱가포르	10	15.1	17
호주	9	13.6	16
태국	9	13.6	13
인도네시아	6	9.09	12
인도	7	10.6	11
멕시코	6	9.09	10
말레이시아	4	6.06	6
홍콩	3	4.54	4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	1.51	2
튀르키예	1	1.51	2
페루	1	1.51	1
뉴질랜드	0	0	0
이스라엘	0	0	0
도미니카공화국	0	0	0

11-2. [MRA 혜택]검사 선별 시 우선검사 혜택이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누적가중치
중국	29	47.5	78
미국	18	29.5	41
인도	16	26.2	41
일본	10	16.3	21
멕시코	12	19.6	21
말레이시아	10	16.3	17
아랍에미리트연합(UAE)	7	11.4	14
튀르키예	7	11.4	14
대만	5	8.19	12
태국	6	9.83	12
도미니카공화국	6	9.83	12
홍콩	6	9.83	11
인도네시아	8	13.1	10
이스라엘	8	13.1	10
페루	5	8.19	10
싱가포르	3	4.91	6
호주	2	3.27	3
뉴질랜드	0	0	0

12-1. [MRA 혜택]서류제출 비율 감소 혜택이 가장 체감되는 국가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누적가중치
중국	35	59.3	91
일본	38	64.4	86
싱가포르	17	28.8	32
호주	15	25.4	27
인도	13	22.0	24

말레이시아	14	23.7	22
인도네시아	8	13.5	20
페루	2	3.38	4
뉴질랜드	3	5.08	3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	1.69	1

12-2. [MRA 혜택]서류제출 비율 감소 혜택이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누적가중치
중국	27	47.3	75
인도	22	38.5	54
일본	15	26.3	35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8	31.5	34
말레이시아	13	22.8	24
인도네시아	16	28.0	24
페루	10	17.5	18
호주	7	12.2	13
싱가포르	5	8.77	12
뉴질랜드	7	12.2	10

13-1. [MRA 혜택]비상 시 AEO 화물 우선 조치 혜택이 가장 체감되는  
국가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누적가중치
중국	24	38.7	89
대만	22	35.4	45
호주	15	24.1	35
싱가포르	11	17.7	24
인도네시아	10	16.1	21
인도	11	17.7	20
멕시코	8	12.9	20

홍콩	9	14.5	19
태국	13	20.9	16
튀르키예	6	9.67	13
뉴질랜드	4	6.45	4
아랍에미리트연합(UAE)	2	3.22	3
페루	2	3.22	3
이스라엘	0	0	0
도미니카공화국	0	0	0

13-2. [MRA 혜택]비상 시 AEO 화물 우선 조치 혜택이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누적가중치
중국	34	57.6	89
인도	20	33.8	48
멕시코	14	23.7	27
아랍에미리트연합(UAE)	9	15.2	22
인도네시아	9	15.2	17
호주	6	10.1	15
튀르키예	8	13.5	15
대만	7	11.8	14
페루	8	13.5	14
태국	7	11.8	12
도미니카공화국	7	11.8	11
이스라엘	7	11.8	10
홍콩	6	10.1	9
싱가포르	3	5.08	6
뉴질랜드	0	0	0

14-1. [MRA 혜택]세관 연락망 활용 혜택이 가장 체감되는 국가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누적가중치
중국	38	66.6	102
대만	27	47.3	58
호주	19	33.3	35
인도	11	19.2	21
인도네시아	9	15.7	21
홍콩	12	21.0	20
튀르키예	8	14.0	17
멕시코	5	8.77	10
뉴질랜드	6	10.5	8
페루	4	7.01	5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	1.75	2
도미니카공화국	1	1.75	1

14-2. [MRA 혜택]세관 연락망 활용 혜택이 가장 체감이 어려운 국가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선택답변)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누적가중치
중국	34	56.6	92
인도	18	30	46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5	25	32
멕시코	13	21.6	26
인도네시아	11	18.3	22
페루	12	20	19
도미니카공화국	9	15	18
튀르키예	9	15	14
호주	5	8.33	13
대만	6	10	11
홍콩	6	10	10
뉴질랜드	7	11.6	9

15. [MRA 혜택]물품검사비율 축소, 검사 선별 시 우선검사, 서류제출 비율 감소, 비상 시 AEO화물 우선 조치, 세관연락망 활용 혜택 외 필요한 추가 혜택을 작성해 주세요.

구분	상세 내용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우선검사
	통관 시 추가서류 요구 비율 감소
	해당국 수입 인증(혹은 면제인증 승인) 등 사후제출 허용
	서류제출 간소화
	검사 생략
	검사비용 지원, 서류 제출 면제
	조치결과 통보
	미국발 화물의 사전신고제도(AMS, ISF) 제출 기한 축소
세금 및 관세 관련 지원	세금 감면 혜택
	관세 특혜
	상대국 비관세 혜택 외 관세 혜택 제공 방안 고려
원산지 및 인증 관련 간소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통관 가능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원산지 표기검사 면제
기타	위험물 내륙운송 물품이동추적 생략(GPS 시스템 활용 혜택 도입)
	AEO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 MRA 신청 없이 연동
	품목분류 및 관세 관련 이슈 시 상대 세관 협조

16. MRA혜택 적용 절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선택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거의 알지 못함	잘 알지 못함	보통	조금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응답자	6	17	48	13	5
비율	6.7	19.1	53.9	14.6	5.6

17. MRA 혜택 적용을 위한 절차를 모르는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복수선택)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나라 별 MRA 혜택 적용 방법에 대한 직관적인 자료 부족	61	42.1
MRA혜택 적용 방법 안내자료 홍보부족(AEO총서 등)	25	17.2
MRA혜택 적용 방법에 대한 자료 현행화 미흡	21	14.5
MRA혜택 적용 방법 안내를 위한 오프라인 활동 부족	19	13.1
국가별 적용 방법 또는 AEO CODE 차이의 문제	19	13.1
기타*	1	1.1

\*취급 품목이 고위험물로, 혜택 적용이 거의 없음

18. MRA 체결국 소재 거래업체에 AEO 공인 취득을 요구하신적이 있으신가요?

(단위 : 명, %)

구분	네	아니오
응답자	22	67
비율	24.7	75.3

19. AEO MRA 혜택을 위해 AEO CODE를 신청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단위 : 명, %)

구분	네	아니오
응답자	42	47
비율	47.2	52.8

19-1. 세관 신고시 AEO CODE를 신고하고 계신가요?

(단위 : 명, %)

구분	네	아니오
응답자	24	18
비율	57.1	42.9

19-2. AEO CODE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해외 거래업체가 AEO 인증을 취득하지 않음	10	55.6
통관 혜택에서의 차이를 체감하지 못함	8	44.4
너무 어려움 (이해불가, 국가별 상이한 CODE 등)	6	33.3
해외 거래업체가 AEO CODE를 제공하지 않음	3	16.7
기타*	2	11.1

\*동사가 AEO 기업임, 품목이 고위험물로, 혜택 적용이 거의 없음 등

19-3. 해외 거래업체에 AEO CODE를 제공하고 있으신가요?

(단위 : 명, %)

구분	네	아니오
응답자	22	2
비율	91.7	8.3

20. MRA 체결국 소재 거래업체와 거래 시 신속한 통관 혜택을 경험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단위 : 명, %)

구분	네	아니오
응답자	26	63
비율	29.2	70.8

20-1. MRA 신속 통관 혜택 경험이 없으신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복수선택)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일반 통관절차가 이미 신속함	22	34.9
해외 거래업체가 AEO 인증을 받지 않음	21	33.3
MRA 체결국에서 실질적 효과가 적용되지 않음	21	33.3

수출업체 중심으로 혜택이 적용됨	8	12.7
기타*	13	20.3

\*해외 거래업체의 요청이 없음, MRA 적용 빈도가 낮음, 신속통관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등

21. MRA 혜택 중 가장 중요한 혜택으로 생각되는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복수선택)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물품 검사 시 우선 검사를 통한 시간 단축	42	47.2
세관 이외 정부 기관에 의한 시간, 절차의 축소 또는 생략	27	30.3
물품 검사 시 대기 또는 준비시간 단축	18	20.2
기타*	2	2.2

\*검사 생략(2건)

22. MRA 제도 운영에 대해 바라는 점을 선택해 주세요(복수선택)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국가 간 혜택을 측정할 실증 자료 제시	35	39.3
MRA 혜택 추가 발굴	22	24.7
기존 MRA 체결 국가 간 혜택 적용에 대한 밀착 관리	20	22.5
MRA 체결국의 확대	12	13.5

23. 추가적으로 MRA체결을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 주세요.(복수선택)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EU	53	59.6
필리핀	14	15.7
브라질	6	6.7
러시아	4	4.5
베트남	4	4.5
기타*	2	2.2
없음	6	6.7

\*나이지리아, 프랑스, 독일 등